|  |  |  |
| --- | --- | --- |
| **요식서비스장소의 공공장소위생허가증 및 식품경영허가증 통합 후 식품경영 허가조건 조정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식약감식감이[2016]10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식품약품감독관리국 :  <요식서비스장소의 공공장소위생허가증 및 식품경영허가증을 통합 및 조정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6]12호)에 근거하여 "지방 위생부서가 요식점, 커피숍, 술집, 찻집 등 4개 유형의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위생허가증을 취소하고 관련 식품안전허가 내용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발급하는 식품경영허가증에 통합시킨다"는 요구를 철저히 관철 및 실행하기 위하여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식품경영허가 관리방법>(총국령 제17호), <식품경영허가 심사통칙(시범시행)>(식약감식감이[2015]228호)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추진한 것을 바탕으로 상기 4개 유형 요식서비스장소의 공공위생허가증을 통합한 후 식품경영허가의 관련 조건 등 사항도 상응하게 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요식점, 커피숍, 술집, 찻집 등 4개 유형 장소의 식품안전과 연관된 위생조건은 <식품경영허가 관리방법> 및 <식품경영허가 심사통칙(시범시행)>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요식서비스 식품경영자(요식점, 커피숍, 술집, 찻집 포함)의 식품경영 허가조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증가한다.  (1) 식사장소의 공기 유통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에어콘 및 환기시설 정기 세척•소독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에 독립된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화장실 정기 청소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3. <식품경영허가 관리방법>, <식품경영허가 심사통칙(시범시행)>의 요구에 따라 <식품경영허가 심사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현지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상기 식품경영 허가조건에 증가시킨 내용을 구체화 하며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016년 8월 22일 |  | **关于餐饮服务场所的公共场所卫生许可证和食品经营许可证整合后调整食品经营许可条件有关事项的通知**  食药监食监二〔2016〕109号  各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局，新疆生产建设兵团食品药品监督管理局：  　　根据《国务院关于整合调整餐饮服务场所的公共场所卫生许可证和食品经营许可证的决定》（国发〔2016〕12号），为切实贯彻落实“取消地方卫生部门对饭馆、咖啡馆、酒吧、茶座4类公共场所核发的卫生许可证，有关食品安全许可内容整合进食品药品监管部门核发的食品经营许可证”的要求，总局在实施《食品经营许可管理办法》（总局令第17号）、《食品经营许可审查通则（试行）》（食药监食监二〔2015〕228号），依法推进食品经营许可的基础上，就上述4类餐饮服务场所公共卫生许可整合后，食品经营许可相关条件等事项做出相应调整。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饭馆、咖啡馆、酒吧、茶座4类场所涉及食品安全的卫生条件，按照《食品经营许可管理办法》和《食品经营许可审查通则（试行）》的规定执行。  　　二、在餐饮服务食品经营者（含饭馆、咖啡馆、酒吧、茶座）的食品经营许可条件中，增加以下内容：  　　（一）保持就餐场所的空气流通；  　　（二）具有定期清洗消毒空调及通风设施的制度；  （三）卫生间具有独立排风系统；  　　（四）具有定期清洁卫生间的制度。  　　三、按照《食品经营许可管理办法》《食品经营许可审查通则（试行）》的要求，在制定或者修订《食品经营许可审查细则》时，根据当地实际情况，对上述食品经营许可条件中增加的内容进行细化，依法做好食品经营许可工作。  食品药品监管总局  2016年8月22日 |